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5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60030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redacted]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7800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1.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2,308,930원, 지방교육세 2,417,650원, 농어촌특별세 3,022,0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5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13면 12행, 같은 면 15행, 14면 15행의 각 "2016. 8. 2." 부분을 각 "2016. 8. 12."라고 고친다.

○ 별지 '관계 법령' 부분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 내용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을 받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제1종 권장시설의 신청자격,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기와 횟수, 임차인의 공연장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임차인이 제1종 권장시설 신청기간 이전에 충분히 공연장 등록을 마치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권장시설 신청기간에 임박하여 안전진단을 진행한 결과 이 사건 쟁점 부분을 민간공연장으로 등록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가 제1종 권장시설 지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5

을 위한 심사를 1년 중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1년 이내에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받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계획은 2016. 8. 12. 변경 공고되면서 민간공연장 중 등록공연장만을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반드시 안전진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6. 7. 8. 드림아트센터를 취득하였고 2016. 7. 27. [redacted]우와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모두 이 사건 관리계획이 위와 같이 변경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취득할 당시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이를 민간공연장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쟁점 부분 취득, 원고와 [redacted]하우의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한 준비, 민간공연장으로의 등록, 제1종 권장시설로의 지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취득하여 이를 제1종 권장시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자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redacted]우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을 민간공연장으로 등록하기 위해 한국산업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5

술시험원에 안전검사 실시를 요청하였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안전진단 담당자가 2016. 11. 2.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이 사건 작품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안전진단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임차인이 이 사건 작품의 공연이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가 규정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서야 안전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에스하우는 2016. 11. 16.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후, 2016년도 권장시설 지정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불과 나흘 후인 2016. 12. 2. 이 사건 쟁점 부분을 공연법 제9조 및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민간공연장으로 등록하였다. 나아가 [redacted]하우는 2017년도 권장시설 신청기간인 2017. 10. 30.부터 같은 해 11월 10일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분을 권장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2017. 11. 28.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받았다. 이처럼 원고와 에스하우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을 방치하거나 준비를 중도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1종 권장시설 지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나아가 종국적으로 이를 제1종 권장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이 사건 조례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권장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3)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하여 제1종 권장시설로 직접 사용을 개시하여야 하는 유예기간은 1년이다. 그런데 원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5

는 2016. 7. 8.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취득하였고, 2016년도 제1종 권장시설 지정 신청 기간은 2016. 11. 21.부터 2016. 11. 28.까지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의 권장시설 지정 심사가 1년에 1회만 이루어지는 점, 원고가 위 신청기간을 놓칠 경우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 제3항 제1호가 정한 취득세 경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쟁점 부분 취득일로부터 권장시설 지정 신청기간까지 5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으로서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판사 문주형

판사 이수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5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7. 5. 18. 서울특별시 조례 제64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끝.